

장학규정

제정 1989.03.01

25차 개정 2025.06.1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송정보대학(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재학생의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고 유능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장학생을 선발하고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대학 장학생의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은 각 장학단체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금 수혜자격으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이어야 한다. 다만,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휴학, 퇴학, 제적 및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22.2.28.>

1. 학업성적 및 품행이 우수한 학생
2. 학교 및 학과(부) 발전에 공이 있는 학생
3. 국가 유공자 및 보훈 대상자의 직계자녀
4. 본 대학 재학 중인 교직원 및 그 배우자와 직계자녀
5. 학과(부) 교수가 추천한 학생으로서 학내 근로를 원하는 학생
6. 경제사정이 곤란하여 학비마련이 어려운 학생
7. 글로벌 역량이 우수한 학생
8. 각종 경진대회 입상자 및 자격증 취득 학생
9. 다문화가정 출신자 및 장애학생(4등급 이내) 중 가계곤란자
10. 기타 사유로 총장이 인정하는 학생

② 제1항제6호의 학생이라 함은 소득분위가 0~8분위 이내인 자로 한다. <신설 2022.2.28.>

제4조(장학위원회의 구성) 장학생의 선발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교육혁신본부장으로 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2.10.4.>
3. 위원은 총장과 부총장을 제외한 대학 교무위원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9.11.>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학생의 선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2. 장학생 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부여하는 사항

제6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2/3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

제2장 장학금의 구분

제7조(장학금의 구분) 장학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교내 장학금
2. 교외 장학금

제8조(교내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 교내장학금의 종류 및 수혜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교직원자녀장학금

1. (목적) 교직원의 복지향상과 그 자녀의 학업을 장려하고자 한다.
2. (적용대상) 적용대상은 학교법인 우송학원 산하 우송대학교 및 우송정보대학 소속 교직원의 자녀(이하 “교직원 자녀”라 한다.) 중 본 대학교 재학생으로 한다.
(단, 겸임교원 및 강사는 제외한다) <개정 2021.8.9.>
3. (지급액,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 장학금은 타 장학금과 중복되는 경우 수업료 한도를 초과 할 수 없으며, 입학금은 제외한다.

구 분	지급액	지급방법	이중수혜	등록금한도
전임교원 및 정규직원의 자녀	학기별 수업료 50%	사전감면	허용	초과불가
초빙교원 및 계약직원의 자녀	학기별 수업료 30%			
직전학기 성적 2.0이상인 자에 한하며, 최초 입학학기는 제외한다. 단, 사전감면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유공자장학금

1. (자격, 장학금액, 지급방법)

자 격	지급액	지급방법	이중수혜	등록금한도
국가유공자	등록금 100%	사전감면	불가	초과불가

③ 글로벌인재장학금 삭제 <2019.4.1.>

④ 글로벌현장실습장학금

1. (목적) 해외 산업체의 현장실습을 장려하여 글로벌 명품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
2. (자격) 본 대학 재학생으로서 글로벌 현장실습(연수) 과정 일체를 총장의 승인을 득한 자로 한다.
3. (장학금액 및 지급방법) <개정 2025.6.16.>

자격	지급액	지급방법	이중수혜	등록금한도
글로벌현장실습(연수) 과정 일체를 총장의 승인을 득한 자	별도책정	생활비	허용	초과가능
장학금 수혜기간은 글로벌현장실습 기간으로 하며, 장학생이 글로벌현장실습과정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수료(이수)하지 못할 시에는 장학금 전액을 환수 조치한다.				

⑤ 기탁장학금

1. (목적) 외부 재단, 업체, 개인이 기부금을 재원으로 재학생의 학업정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급한다.
2. (재원) 장학금의 재원은 외부 재단, 업체, 개인이 기부금으로 지급한다.
3. (자격, 장학금액, 지급방법) <개정 2025.6.16.>

자격	지급액	지급방법	이중수혜	등록금한도
재학생 중 학과(부) 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별도책정	생활비	허용	초과가능

⑥ 대외학술입상장학금

1. (목적) 재학 중 대외 학술활동(경시대회·작품공모전 등)에서 입상하여 본 대학의 명예를 드높인 학생을 포상하고 대외 학술 활동을 장려하고자 한다.
2. (자격, 지급액, 지급방법, 장학금신청) 장학생의 자격은 재학생으로서 장학금액은 다음표와 같이 정한다. 장학금은 대표학생(팀 및 개인)에게 지급하고, 국제대회는 3개국 이상이 참여한 대회를 말하며, 입상자(팀) 중 대회규모 및 수상 실적에 따라 장학금액을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책정할 수 있다. 단, 국제대회라도 3개국 이하 참가시 전국대회로 적용한다. <개정 2025.6.16.>

구 분	지급액		지급방법	이중수혜	등록금한도
	3위내	3위외			
국제대회	20만원	10만원	생활비	허용	초과가능
전국대회	10만원	5만원			
지방대회	5만원	3만원			
장학생은 대외 학술활동 등에서 수상한 경우 수상실적증명원 및 대회요강 등을 제출하여야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2.22.>					

⑦ 대전인재장학금 삭제 <2020.2.17.>

⑧ 명장장학금 삭제 <2023.9.11.>

⑨ 밀리언어워드장학금

1. (목적) 재학생의 자격증 취득을 적극 지원하여 학생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을 장려하고자 한다.
2. (자격, 장학금액, 지급방법, 장학금신청) <개정 2021.02.22., 2023.9.11., 2025.6.16.>

자 격	지급액	지급방법	이중수혜	등록금한도
재학생 중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산업기사 이상), 철도 운전면허 1차 합격자	30만원	생활비	허용	초과가능
장학금은 해당 자격증을 제출하여야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⑩ 벤처창업아이디어우수장학금

- (목적) 벤처창업동아리를 활성화하고 창의력을 향상하고자 한다.
- (자격, 장학금액, 지급방법) <개정 2025.6.16.>

자 격	지급액	지급방법	이중수혜	등록금한도
벤처창업동아리 활동을 활발히 하는 재학생으로서 창업교육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	별도책정	생활비	허용	초과가능

⑪ 보훈자녀, 광주민주화, 북한이탈주민장학금

- (자격, 선발기준, 장학금액, 지급방법)

자 격	선발기준	지급액	지급방법	이중수혜	등록금한도
보훈자녀	직전학기 평균성적 70점 이상인 자	등록금 50%	사전감면	불가	초과불가
광주민주화					
북한이탈주민					

⑫ 복지장학금

- (목적) 기숙사 운영에 공로가 있는 학생의 학업을 장려하고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
- (자격, 장학금액, 지급방법) <개정 2025.6.16.>

자 격	지급액	지급방법	이중수혜	등록금한도
기숙사 업무운용에 공로가 있는자	관리비 100%	생활비	허용	초과가능

⑬ 산업체재직자우대장학금 <삭제 2024.8.26.>

- 삭제 <2024.8.26.>
- 삭제 <2024.8.26.>

⑭ 생활지원장학금

- (목적) 신입생 및 재학생의 가계 부담을 최소화하고 생활정착을 지원하여 학업을 장려하고자 한다.
- (자격, 장학금액, 지급방법)

자 격	지급액	지급방법	이중수혜	등록금한도
기숙사 입사를 신청하였으나 탈락하여 외부 숙박시설을 임대계약 후 거주하는 자	별도책정	사전감면	허용	초과불가
대전지역 거주자는 제외하며, 장학금은 1학기에 한하여 감면 지급				

⑮ 성적우수장학금

1. (목적) 재학생의 학습의욕을 고취하고 면학분위기를 조성하여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2. (장학생의 배정) 본 장학금의 장학생 배정기준은 4월1일자, 10월1일자 학과(부)별 재학생 인원을 기준으로 배정하며, 배정기준 인원은 아래 표와 같다. 단, 전공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학부는 전공별 인원으로 장학생을 배정한다.

배정기준 인원	장 학 생 수			
	자립	단정	독행	계
1~5	-	-	1	1
6~10	-	1	-	1
10~20	1	1	-	2
21~30	1	1	1	3
31~40	1	1	2	4
41~50	1	1	3	5
51~60	1	2	3	6
61~70	1	2	4	7
71~80	1	2	5	8
81~90	1	2	6	9
91~100	1	2	7	10
101~110	2	2	7	11
111~120	2	2	8	12
121~130	2	2	9	13
131~140	2	2	10	14
141~150	2	2	11	15
151~160	2	3	11	16
161~170	2	3	12	17
171~180	2	3	13	18
181~190	2	3	14	19
191~200	2	3	15	20

3. (선발기준) 본 장학금의 장학생 선발기준은 직전학기(1학기, 2학기)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단, 타 장학금 수혜내역과 가계 소득분위를 고려하여 학과(부) 교수회에서 조정하여 선발할 수 있다.)
4. (자격, 장학금 종류, 지급액, 지급방법) 본 장학금의 종류 및 장학금은 다음표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23.9.11.>

자 격	구 분	지급액	지급방법	이중수혜	등록금한도
성적이 우수한 자로서 소속 학과(부)장의 추천을 받은 자	자 립	수업료 50%	사전감면	허용	초과불가
	단 정	수업료 20%			
	독 행	수업료 10%			
본 장학금은 해당학기 등록을 필하지 않을 시 소멸된다.					

⑩ 연계장학금 삭제 <2019.4.1.>

⑪ 영어성적우수장학금 삭제 <2019.4.1.>

⑫ 외국어성적우수장학금

1. (목적) 재학생의 외국어능력을 향상하여 글로벌 역량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2. (자격, 종류, 장학금액, 지급방법) 본 대학 재학생으로서 장학생의 자격, 종류, 장학금액, 지급방법은 다음표와 같다. <개정 2021.2.22., 2023.9.11.>

자격명	기준점수	지급액	지급방법	이중수혜	등록금한도
TOEIC	750점 이상	수업료 50%	사전감면	신입생 불가, 재학생 허용	불가
TOEIC-S	150점 이상				
JPT	650점 이상				
HSK	5급 이상				
공인 외국어성적 유효기간 및 이에 상응하는 외국어자격시험 성적을 적용한다. 단, 신입생은 2.(자격, 종류, 장학금액, 지급방법)의 외국어성적에 준하고, 당해연도 3월 1일부터, 입학년도 2월 28일말일까지의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본 장학금은 해당 공인성적 증명원을 제출하여야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공인외국어시험 성적의 적용기간은 1학기 1월1일부터 6월30일, 2학기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⑬ 외국어시험응시료지원장학금 삭제 <2023.9.11.>

⑭ 우송가족장학금

1. (목적) 한 가정에 2명 이상이 본 대학에 재학 시 학부모의 어려운 가계사정을 지원하여 학업을 장려하고자 한다.
2. (자격 · 장학금액 · 지급방법)

자 격	지급액	지급방법	이중수혜	등록금한도
2인 이상 재학중인 가족단위 친결연자	1인당 30만원	사전감면	허용	초과불가
친결연자(형제, 자매, 남매, 부자, 부녀, 모자, 모녀, 부부 등)				

⑮ 우송드림장학금

1. (목적)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학습의욕을 고취하고 학업 생활을 지원하고자 한다.
2. (자격 · 장학금액 · 지급방법)

자 격	지급액	지급방법	이중수혜	등록금한도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기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자	가계소득 분위에 따라 매학기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책정	사전감면	허용	초과불가
가계 소득분위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받는 자료를 활용하며, 해당학기 등록을 필하지 않을 시 소멸된다.				

3. (지급대상) 소득분위 0분위에서 3분위이내인 자를 우선대상으로 하며, 4분위에서 8분위까지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신설 2021.2.22.>

㉔ 우송리더십장학금

1. (목적) 가계가 곤란한 학생에게 학비마련 기회 제공 및 행정업무 습득을 통한 예비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2. (자격) 재학생(유학생 포함) 중 학교에서 근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 자로 한다.
 3. (장학금액) 장학금은 근로시간당 최저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단, 업무량, 전문성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책정할 수 있다.
 4. (근로장소) 근로 장소는 본 대학 내 행정부서, 부속기관, 학과(부)의 실험실습실, 학교기업, 주차시설, 학내·외 홍보활동, 각종 행사지원 활동 및 본 대학 외 장애인 시설,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전공산업체로 한다.
 5. (인원배정) 근로인원 배정은 당해 연도 책정된 근로장학금 예산대비 주 20시간 이내, 월 80시간 이내 근로를 조건으로 하며, 당해 연도 3월1일, 9월1일을 기준으로 학과(부)별 정원내·외 재학생수에 비례하여 학과별로 인원을 배정하여 학과(부) 및 행정부서 등에 배치한다.
 6. (선발기준) 장학생의 선발기준은 다음 각 목으로 정한다.
 - 가. 1순위 : 가계소득 0 ~ 4분위 이내인 자로서 지도교수(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 나. 2순위 : 직전학기 성적 70점 미만자 중 학교생활에 적응이 어렵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로서 지도교수(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 다. 3순위 : 불가피한 사정으로 긴급 생활지원비가 필요한 학생으로서 지도교수(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 라. 유학생은 담당부서에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배정 및 선발한다.
 - 마. 교외 : 국가근로 승인자 중 지도교수 및 파견업체 대표의 추천을 받은 자
 - 바. 기타 총장의 승인을 받은 자
7. (근무일지제출) 근로부서에서 출근부를 작성하여 매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8. 근무일지를 기한 내에 미제출한 경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9. (등록금초과여부) 본 장학금은 생활비지원 장학금으로 해당학기 등록금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10. (국가교육근로대응장학금) 국가교육근로대응장학금은 국가교육근로장학제도 기준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㉕ 우송인재장학금

1. (목적) 재학 중 학생회 간부로서 학교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학생에게 학업을 장려하고자 한다.
2. (자격 및 장학금액) <개정 2025.6.16.>

구 분	지급액	지급방법	이중수혜	등록금한도
총학생회장	250만원	생활비	허용	초과가능
대의원의장	250만원			
부회장	230만원			
부의장	230만원			
총학생회 각부장	190만원			

3. (지급시기) 장학금의 지급 시기는 1학기, 2학기에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4. (지급제한) 장학금은 다음 각 목에 해당될 경우 지급을 제한한다.

가. 대학 및 학과의 명예를 실추 시킨 자

나.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 시킨 자

다. 학과(부)장, 지도교수, 학생지도위원의 지도에 불응하는 자

라. 학생회 간부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자

마. 학내·외 소요사태를 주동하거나 동요하는 자

㉔ 우송튜터링장학금

1. (목적) 학과(부)별 재학생의 튜터링을 활성화 하고 학습의욕을 고취시켜 우수한 인재로 양성하고자 한다.

2. (자격) 장학금의 자격은 학과(부)의 튜터로서 소속 학과(부)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한다.

3. (자격, 장학금액, 지급방법) <개정 2021.2.22., 2025.6.16.>

자 격	지급액	지급방법	이중수혜	등록금한도
학과(부)의 튜터로서 소속학과(부)장의 추천을 받은 자	별도책정	생활비	허용	초과가능

4. (지급시기) 장학금의 지급 시기는 1학기, 2학기의 종료시점에서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5. (지급제한) 장학금은 다음 각 목에 해당될 경우 지급을 제한 할 수 있다.

가. 대학 및 학과(부)의 명예를 실추 시킨 자

나.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 시킨 자

다. 학과(부)장, 책임지도교수, 학생지도위원의 지도에 불응하는 자

라. 학내·외 소요사태를 주동하거나 동요하는 자

마. 튜터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자

㉕ 우송프론티어장학금

1. (목적) 대학에서 실시하는 각종 경진대회를 통한 재학생의 어학 및 전공 역량을강화하고자 한다.

2. (계획및결과보고) 대학에서 각종 경진대회를 시행하고자 하는 행정부서 및 부속기관은 시행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일체를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6.16.>

자 격	지급액	지급방법	이중수혜	등록금한도
재학생으로서 총장의 승인을 받은자	별도책정	생활비	허용	초과가능
국내·외 연수로 시행할 경우 장학금을 연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㉔ 유학생장학금

- (목적) 우수한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유학생의 대학생활 조기적응 지원 및 재학 중 학습 동기를 부여하여 명품인재로 양성하고자 한다. (단, 유학생장학금은 201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자격, 종류, 지급방법) 장학금의 자격은 유학생으로서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방법은 다음 각 목으로 정한다.

가. 입학장학금 <개정 2022.2.28., 2025.6.16.>

구 분	입학구분 및 자격명		지급액		지급방법
			입학금	수업료	
입학장학금	일 반		100%	20%	사전감면
협약장학금	협 약		100%	20%	
교환유학생장학금	교 환		별도책정	별도책정	
입학우수장학금	일 반	TOPIK2급		10%	
		TOPIK3급		20%	
		TOPIK4급		30%	
	협 약	TOPIK4급		50만원	생활비
		TOPIK5급		100만원	
입학장학금 수업료 20% 감면 수혜대상은 일반입학 영어트랙 유학생에 한정하며, 입학우수장학금과 중복수혜를 허용하지 않는다.					

나. 학업장려장학금

- 재학 중 해당학기 16 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경고 이상의 징계가 없는 유학생은 다음표와 같이 장학금을 감면한다. <개정 2024.8.26.>

등 급	자 격	지급액
A 등급	직전학기 평점 평균이 4.15 이상, TOPIK 5 급이상인 자	수업료 70% 감면
B 등급	직전학기 평점 평균이 4.15 이상, TOPIK 4 급이상인 자	수업료 50% 감면
C 등급	직전학기 평점 평균이 3.0 이상, TOPIK 3 급이상인 자	수업료 20% 감면
D 등급	직전학기 평점 평균이 2.5 이상, TOPIK 2 급 이상인 자	수업료 15% 감면

- D 등급은 협약학교 외국인 유학생만 적용한다.

다. 영어학업장려장학금 <신설 2023.9.11.>

- 재학 중 해당학기 16 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경고 이상의 징계가 없는 유학생은 다음표와 같이 장학금을 감면한다. <개정 2024.8.26.>

등 급	자 격	지급액
A 등급	직전학기 평점 평균이 4.15 이상, TOPIK 5 급이상 또는 Duolingo 105 점 이상인 자	수업료 70% 감면
B 등급	직전학기 평점 평균이 4.15 이상, TOPIK 4 급이상 또는 Duolingo 95 점 이상인 자	수업료 50% 감면
C 등급	직전학기 평점 평균이 3.0 이상, TOPIK 3 급이상 또는 Duolingo 85 점 이상인 자	수업료 20% 감면
D 등급	직전학기 평점 평균이 2.0 이상, TOPIK 2 급이상 또는 Duolingo 75 점 이상인 자	수업료 15% 감면

2) 공인영어능력시험 성적은 별도 환산표에 따른다.

라. 복지장학금 <개정 2023.9.11.>

- 1) 협약학교 유학생이 본 대학 기숙사를 입주할 시 관리비 50%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감면한다.(단, 여름학기 및 겨울학기는 제외한다.)

마. 유학생인력양성장학금 <신설 2024.2.26.> <개정 2024.8.26.>

자 격	지급액	지급방법	이중수혜	등록금한도
E-7, E-9, E-10, F-1, F-4, F-6, H-1, H-2, G-1-5, G-1-6, G-1-99 등 법무부에서 국내거주 및 학업이수를 허가한 비자 소지자	매학기 수업료 30% 감면	사전감면	신입학시 불가, 차기학기부터 허용	초과불가
위 자격의 비자를 소지하고 현재 국내에 거주중인 자				

바. 기타장학금 <개정 2023.9.11., 개정 2024.2.26.>

- 1) 적극적인 학교생활을 격려하기 위해 특별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2)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한국어 말하기경진대회 등을 실시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 3) (등록금초과여부) 입학장학금 및 성적우수장학금은 등록금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복지장학금 및 기타장학금은 등록금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㉓ 일본어성적우수장학금 삭제 <2019.4.1.>

㉔ 입상장학금

1. (목적) 본 대학은 각종 경시·경진대회 개최하여 고교 학생들이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장학금을 지원하여 우수한 신입생을 유치하고 자 한다.
2. (자격, 장학금액 및 지급방법)

자 격	지급액	지급방법	이중수혜	등록금한도
대학 또는 학과(부)에서 주최한 각종 경시·경진대회에 입상한 고교생이 우리대학에 입학한 자	대회규모에 따라 별도책정	사전감면	불가	초과불가

㉔ 입학성적우수장학금

1. (목적) 우수한 신입생을 유치하고 학업을 장려하여 미래 자산이 될 우수 인적자원을 배출하고자 한다.
2. (자격, 장학금액 및 지급방법)

자 격	지급액	지급방법	이중수혜	등록금한도
신입생으로서 학과 모집 전형별 입학성적이 상위 10%이내인 자	수업료 100만원	사전감면	불가	초과불가
추가 합격자는 제외				

㉕ 장학사정관추천장학금

1. (목적) 학생의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장학금 정보제공 및 장학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경제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중도탈락자를 방지하고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
2. (장학사정관의 역할) 장학사정관의 역할은 다음 각 목으로 정한다.
 - 가. 교내·외 각종 장학금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한다.
 - 나. 학생 개별상담을 통해 가정형편과 성적 등을 고려하여 장학금을 사정한다.
 - 다. 학생의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장학금 정보를 제공한다.
 - 라. 장학금의 효율적 집행과 운영을 위해 장학금 중복지원 점검 및 소득분위 파악 등 장학금지원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한다.
3. (장학금 지급대상자)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목으로 정한다.
 - 가. 긴급한 경제사정의 변화가 발생으로 인한 가계가 곤란한 자
 - 나. 자연재해 또는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어 가계가 곤란한 자
 - 다. 중대 질병과 건강악화로 인한 가계가 곤란한 자
 - 라. 기타 가계가 곤란한 자로서 장학사정관의 추천을 받아 총장의 승인을 받은 자
4. (장학금액 및 지급방법) 장학금은 사안별로 총장의 승인을 별도로 지급한다.
5. (등록금초과여부) 본 장학금은 생활비지원 장학금으로 해당학기 등록금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㉖ NewChallenge장학금 삭제 <2023.9.11.>

㉗ 중국어성적우수장학금 삭제 <2019.4.1.>

㉘ 취업지원교육장학금

1. (목적) 재학생의 취업역량 강화 및 자격증취득을 지원하여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2. (자격, 장학금액 및 지급방법) <개정 2025.6.16.>

자 격	지급액	지급방법	이중수혜	등록금한도
취업지원 교육 및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수학하는 학생으로서 소속 학과(부)장의 추천을 받은 자	사안별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책정	생활비	허용	초과가능

㉔ 해외연수장학금

1. (목적) 해외연수를 장려하여 글로벌 명품인재로 양성하고자 한다.
2. (자격, 장학금액 및 지급방법) <개정 2025.6.16.>

자 격	지급액	지급방법	이중수혜	등록금한도
재학생으로서 해외연수 과정 일체를 총장의 승인을 득한 자	해외연수 과정에 따라 별도책정	생활비	허용	초과가능

㉕ 특별장학금

1. (목적) 제8조에 규정된 장학금 이외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한다. <개정 2025.6.16.>
2. (자격, 장학금액 및 지급방법) <신설 2025.6.16.>

자 격	지급액	지급방법	이중수혜	등록금한도
총장이 장학금 지급을 승인한 자	별도책정	사전감면	불가	초과불가
		생활비	허용	초과가능

㉖ 계약학과장학금 삭제 <2023.9.11.>

㉗ 우송대의원장학금

1. (목적) 학과(부)별 대의원으로서 학교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학생에게 학업을 장려하고자 한다.
2. (종류 및 장학금액) 장학금의 종류별 장학금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25.6.16.>

구 분	지급액	지급방법	이중수혜	등록금한도
학과(부) 대표	학기별 40만원	생활비	허용	초과가능
2,3,4학년	학기별 30만원			
1학년	학기별 20만원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A등급 100%, B등급 70%, C등급 50%, D등급 0%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3. (지급시기) 장학금의 지급 시기는 1학기, 2학기의 종료시점에서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4. (지급제한) 장학금은 다음 각 목에 해당될 경우 지급을 제한한다.
 - 가. 대학 및 학과의 명예를 실추 시킨 자
 - 나.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 시킨 자
 - 다. 학과(부)장, 지도교수, 학생지도위원의 지도에 불응하는 자
 - 라. 대의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자
 - 마. 학내·외 소요사태를 주동하거나 동요하는 자

㉘ 협약(고교)장학금

1. (목적) 본 대학과 전국 고교간의 협약을 통하여 유대를 강화하고 우수한 신입생을 유치하고자 한다.
2. (자격, 장학금액 및 지급방법) <개정 2021.2.22.>

자 격	지급액	지급방법	이중수혜	등록금한도
신입생으로 우리대학과 협약을 체결한 고교 출신자	수업료 100만원	사전감면	불가	초과불가
타 입학장학금과 이중수혜를 허용하지 않는다.				

㉔ 재능장학금 <개정 2022.10.4.>

1. (목적) 신입생의 자격증 취득에 따른 장학금 지급을 하고자 한다.
2. (자격, 장학금액 및 지급방법)

자 격	지급액	지급방법	이중수혜	등록금한도
우리대학 지원학과와 관련된 기능사 자격증을 2개 이상 취득한 학생(산업기사는 1개 이상)	수업료 100만원	사전감면	불가	초과불가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수업료 100만원	사전감면	불가	초과불가
기계컴퓨터계열, 철도건축소방계열 학과만 해당하며, 자격증 인정여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된 자격증에 한하여 해당 학과(부)에서 심사하여 결정함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장학금은 간호학과를 제외한 전학과가 해당됨				

㉕ 군협약장학금 <신설 2021.4.5.> 삭제 <2023.9.11.>

㉖ 희망드림장학금 <신설 2021.8.9.>

1. (목적) 신입생 중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의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장학금을 지원하여 학업을 장려하고자 한다.
2. (자격, 장학금액 및 지급방법)

자 격	지급액	지급방법	이중수혜	등록금한도
신입생으로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수업료 100만원	사전감면	불가	초과불가

㉗ 뉴스타트장학금 <신설 2021.8.9.>

1. (목적) 우수한 신입생을 유치하고 학업을 장려하여 미래 자산이 될 우수 인적자원을 배출하고자 한다.
2. (자격, 장학금액 및 지급방법) <개정 2023.12.18.>

자 격	지급액	지급방법	이중수혜	등록금한도
직업(위탁)과정 이수자	수업료 100만원	사전감면	불가	초과불가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제공자에 한하여 지급				

㉘ 학원추천장학금 <신설 2021.8.9.>

1. (목적) 신입생 선발시 고교재학 중 전공과 관련된 학원 수강자에 장학금을 지원하여 학업을 장려하고자 한다
2. (자격, 장학금액 및 지급방법)

자 격	지급액	지급방법	이중수혜	등록금한도
전공관련 학원 이수자로 학원장 추천자	수업료 100만원	사전감면	불가	초과불가
우리대학과 협약이 체결된 학원에 한하여 지급				

④④ 신설학과지원장학금 <신설 2021.8.9.> 삭제 <2023.9.11.>

④⑤ 동문가족장학금 <신설 2021.8.9.>

- (목적) 우수한 신입생 유치를 위하여 우리대학을 졸업한 동문의 자녀 및 형제·자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업을 장려하고자 한다.
- (적용대상) 적용대상은 학교법인 우송학원 산하 우송정보대학, 구 대전실업전문대학, 구 우송공업대학, 구 중경공업전문대학을 졸업한 동문의 자녀 및 형제·자매가 우리대학에 신입학한 자
- (자격, 장학금액 및 지급방법)

자 격	지급액	지급방법	이중수혜	등록금한도
동문의 자녀 및 형제·자매	수업료 100만원	사전감면	불가	초과불가

④⑥ 우송면학장학금 <신설 2021.8.9.> 삭제 <2023.9.11.>

④⑦ 평생학습장학금 <신설 2021.8.9.> <개정 2022.2.28., 2023.9.11.>

- (목적) 신입학 성인학습자를 위해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업을 장려하고자 한다.
- (자격, 장학금액 및 지급방법) <개정 2023.9.11., 2023.12.18., 2025.2.24.>

자 격	지급액	지급방법	이중수혜	등록금한도
성심당, 하레하레 재직자, 25세 이상 대전소재 동구주민, 25세 이상 파크골프과정 신입학자	수업료 100%, 차기 학기부터 매학기 50%	사전감면	신입학시 불가, 차기학기부터 허용	초과불가
국가장학금 신청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성심당, 하레하레 재직자 해당과는 자율전공 및 관련 전공학과, 25세 이상 대전소재 동구주민 해당과는 사회복지과, 호텔관광과, 25세 이상 파크골프과정 해당과는 호텔관광과, 자율전공학부에 한한다.				

- (지급제한) 입학 후 관련 전공학과로 전과시 장학금을 지급하며, 다음 각 목에 해당될 경우 지급을 제한 할 수 있다. <신설 2025.2.24.>

가. 협약업체 퇴직 <신설 2025.2.24.>

나. 타지역으로 전입 <신설 2025.2.24.>

④⑧ 재학생추천장학금 <신설 2021.8.9.> 삭제 <2023.9.11.>

④⑨ 성인학습장학금 <신설 2023.9.11.>

- (목적) 신입학 성인학습자를 위해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업을 장려하고자 한다.
- (자격, 장학금액 및 지급방법)

자 격	지급액	지급방법	이중수혜	등록금한도
25세 이상 신입학자	수업료 50%, 차기학기부터 매학기 25%	사전감면	신입학시 불가, 차기학기부터 허용	초과불가
국가장학금 신청자에 한하여 지급				

⑤⑩ 신설학과장학금 <신설 2023.12.18.> <개정 2024.2.26.>

1. (목적) 신설학과 신입생의 대학생활 조기적응 지원 및 재학 중 학습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한다.
2. (자격, 장학금액 및 지급방법, 적용시기)

자 격	지급액	지급방법	이중수혜	등록금한도
신설학과 중 총장이 장학금 지급을 승인한 학과(부)	수업료 100%, 차기학기부터 매학기 25%	사전감면	신입학시 불가, 차기학기부터 허용	초과불가
2024학년도 신설학과부터 적용하며, 국가장학금 신청자에 한하여 지급				

⑤⑪ 일학습병행장학금 <신설 2024.2.26.>

1. (목적) 고숙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일학습병행 계약학과 소속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우수 인적자원을 배출하고자 한다.
2. (자격, 장학금액 및 지급방법, 적용시기)

자 격	지급액	지급방법	이중수혜	등록금한도
일학습병행 계약학과 소속학생	매학기 전액감면	사전감면	불가	초과불가

⑤⑫ e-스포츠선수단장학금 <신설 2025.2.24.>

1. (목적) 학과 교육특성에 의해 선수단을 설립하여 선발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우수 인적자원을 양성하고자 한다.
2. (자격, 장학금액 및 지급방법, 적용시기)

자 격	지급액	지급방법	이중수혜	등록금한도
선수단에 선발된 학생	매학기 전액감면	사전감면	불가	초과불가
국가장학금 신청자에 한하여 지급				

제9조(교외장학금) 교외장학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장학단체 또는 개인이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하며 장학생의 선발 및 지급은 다음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장 학 명	지 급 기 준
국가장학금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국가장학금지원 사업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단 국가Ⅱ유형 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배정받은 금액을 총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다.
지방자치단체장학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한다.
사설 및 기타장학금	장학단체 또는 개인이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단체 또는 개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3장 장학생 배정 및 선정

제10조(장학생 배정) 장학생의 인원배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과(부) 및 재학생수에 비례하여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장학생 선정절차) 위원회에서 학과(부)에 배정된 장학생 수를 감안하여 지도교수가 적격자를 선정하여 해당 학과(부)장에게 추천하며, 학과(부)장은 추천된 학생을 심사하여 순위를 정한 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제12조(장학생의 확정) 위원장은 제11조에 의한 장학생을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장학생으로 확정한다.

제13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의 지급은 매학기 선정된 학생에게 사전감면 또는 생활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6.16.>

② 교내장학금 중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장학금은 장학금의 명칭에 상관없이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총감면액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수혜기간)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특별히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1학기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이중수혜허용 및 금지) 장학금은 등록금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중수혜를 허용하고, 단, 총장이 승인하는 경우 등록금을 초과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자격상실) 장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장학금 수혜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
2. 장학금 급여 신청서의 허위기재
3.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제외된 학생

제17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으로서 선정된 학생은 학업에 정진하여야 하며 학칙을 성실히 이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제18조(기타) 장학사항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2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7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은 2011학년도 등록금의 감면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재입학장학금은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재입학장학금은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5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 계약학과장학금은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2019년 3월 1일자로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의 특례) 이 규정은 2020년 1월부터 적용한다. 단, 유학생장학금은 2019년 8월, 명장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은 2020년 9월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2월 28일부터 시행하되, 제3조(장학생의 자격)와 제8조(교내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9월 11일부터 시행하되, 제8조제9항 및 제18항은 2024년 3월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